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11

발의연월일: 2021. 2. 26.

발 의 자:조승래・김민기・양정숙

김회재 · 장철민 · 이규민

전혜숙 · 강선우 · 이성만

윤건영 • 변재일 • 이정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책임투자는 투자의 결정에 있어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등을 재무적 요소와 통합적으로 고려해 위험과 기회를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확보하는 투자기법임.

사회책임투자는 전 세계 주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류 투자 철학이자 기법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으며, UN에서도 유엔책임투자원칙 (UN PRI)을 통해 이를 지지하고 장려하고 있음.

이러한 사회책임투자는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촉진하여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동반성장에도 기여하는 바, 정보통신진흥기금 역시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공공자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기금의 안정적 인 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 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제4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운용
	·관리하는 경우 환경·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u>수 있다.</u>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u>제1항 및 제2항</u> 에서 규정한	<u>④</u>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